

제 호



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

1. 기관(단체)명:
2. 소재지:
3. 대표자:
4. 지정일:
5. 대행업무:

위 기관(단체)을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5조의9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

